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70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균택 · 조인철 · 박지원 · 전진숙 · 정준호 · 맹성규
김현정 · 김태년 · 이진태 · 황정아 · 서영교 · 김태선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11. 5.

3. 회 부 일 : 2024. 11. 6.

※ 의안번호 : 527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선서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현행법에 선서 후 인사청문 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최고위 공직자에 해당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정직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16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사청문 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에 관한 선서를 하도록 하고, 허위진술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생략)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제16조의2(허위진술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¹⁾은 증인과 감정인에게 위증에 대한 선서를 받고 이들의 위증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반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부재함.

이에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하여 공직후보자의 선서의 내용도 정비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 있고 진실한 답변을 담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처벌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거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²⁾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논거로는 ① 헌법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의 원칙³⁾에 부합하지 않는 점⁴⁾, ② 형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 2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상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타 법률 역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 ③ 현행법 제정 당시 공직후보자와 국정조사를 받는 증인은 그 신분이 다르고 공직후보자로부터 진실을 답변하겠다는 선서를 받도록 하였음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은 점⁵⁾ 등이 있음.

반면에, 처벌이 필요하다는 논거로는 ① 공직후보자가 선서 시 사실만을 말한다고 했으므로 허위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국한되므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제한할 수 있는 점, ③ 후보자에 대한 사실에 관해 위증한 증인은 형사

3)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대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제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다"고 실시함(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 5494 판결).

5) 2000. 6. 19, 제212회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中

○鄭寅鳳委員 (생략) 두 번째로 그러면 과연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취임하기 때문에 여러 부원들이나 국민들 앞에서 선서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질을 검증받는 마당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의 증인과 유사하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언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라는 실제로 심판을 받고 자질을 검증받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이 그저 공직후보자로서 나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겠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는.....그러면 실제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거짓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양심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이 그저 선서만 듣는 것으로 소위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청문회 존립 자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崔鎭熙委員 (생략) 조금 전까지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법안에 따른 공직후보자는 국가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데 이 법안에서 공직후보자는 일반 비리에 관련되었든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정조사를 받는 대상자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허위진술·답변일 경우에는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 이 점에 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국은 일반 국정조사의 대상자하고 인사청문회법안의 대상자하고는 신분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하 생략)

처벌⁶⁾하면서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이 있음.

둘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을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직후보자의 신분, 허위진술의 처벌 필요성 및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과 유사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증인의 위증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일반법인 「형법」은 증인의 허위진술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규율함.

[표-2] 허위진술에 관한 벌칙 관련 입법례 비교

구 분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처벌대상	공직후보자의 위증	국회 증인의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형 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셋째,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죄를 신설하고 그의 선서 내용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⁷⁾와 같이 고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6)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있음.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하여 누구든 범죄혐의를 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고발 규정을 둔 것은 국회의 자율권 측면에서 국회 내부의 의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국회의 고발이 있을 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위증 등의 범죄행위로 국회의 안전심의 등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취지임.⁸⁾⁹⁾

이를 고려하면, 인사청문회에서의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도 별도의 고발조항을 두어 국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0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9) 대법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위증죄와 관련하여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과 위증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였음.